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합52009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루미리치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7. 4. 7.

판결 선고 2017. 4.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016,805원 및 그중174,144,558원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루미리치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3.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09. 8. 13.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보증원금을 2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8. 1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원금은 171,000,000원, 보증기한은 2016. 2. 5.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09. 8.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 ④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권 발생

1) 피고 A은 2015. 11. 30.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국민은행은 2016. 1. 7. 원고에게,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10. 국민은행에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 원리금 합계 174,144,558원(= 원금 171,000,000원 + 이자 3,144,558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대출과 관련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의 만료일다음 날인 2016. 2. 6.부터 대위변제일 전일인 2016. 3. 9.까지 적용보증료율 연 1.6%에연이율 0.5%를 가산한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324,660원(= 1억 7,100만원 × 2.1% × 33/365일)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579,520원을 지출하였다가 2016. 3. 11. 31,933원을 회수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잔액은 1,547,587원(= 1,579,520원 - 31,933원)이 되었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는 2015. 3. 30. 피고 루미리치 주식회사(이하 '피고 루미리치'라고 한다)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20,000,000원, 채무자는 주식회사 F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루미리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3. 31.접수 제546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임의경매절차 진행 경과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 루미리치에 30,916,6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 루미리치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2. 4. 피고 루미리치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697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C, D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74,144,558, 추가보증료보전비용 잔액324,660원, 구상금 채권1,547,587원합계176,016,805원(=174,144,558원 + 324,660원 + 1,547,587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74,144,5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3. 10.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2016. 10.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루미리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를 근거로 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국민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2016. 3. 10.에 비로소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로 지목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당시 이미 원고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이 이미 성립한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5. 3. 30.로부터 8개월 후인 2015. 11. 30.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의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보인다(원고가 피고 A의 재정상태에 관한 심사를 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였을 것이라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 루미리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개연성은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16. 3. 10. 현실화되어 원고는 국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루미리치는, 피고 B는 보증인보호법에 의한 호의 보증인이고 보증인보호법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보증기간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 8.경에 피고 B와 당초 2014. 8. 8.이었던 보증기한 연장을 위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2015. 8.경에 이르러 연대보증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비로소 보증기간을 2015. 8. 7.부터 2016. 8. 5.로 특정하였는바,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5. 3. 30. 당시 기준으로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기간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더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이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 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 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준수되었는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족하는지에 좇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3년 이후 2013. 8. 9.에서 2014. 8. 8.로, 다시 2014. 8. 8.에서 2015. 8. 7.로 각 연장된 사실, 피고 B가 2013. 8.경 원고에게 제출한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는 보증기한이 2013. 8. 9.로, 조건변경내용에는 보증기한을 2013. 8. 9.에서 2014. 8. 8.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가 2014. 8.경 원고에게 제출한 보증조건변경신청서 및 원고와 작성한 연대보증서에는 보증기한이 모두 2014. 8. 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가 2015. 8.경 원고에게 제출한 보증조건변경신청서 및 원고와 작성한 연대보증서에는 보증기한이 모두 2015. 8. 7.로 기재되어있고, 위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는 조건변경내용에는 보증기한을 2015. 8. 7.에서 2016. 8. 5.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 연대보증서에는 보증기간이 2015. 8. 7.부터 2016. 8. 5.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보증기간 연장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 B가 2014. 8.경 원고와 작성한 연대보증서에 보증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연대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증기간을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로 하는 의사합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의 보증방법란에 '개별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약정서에는 「(개별거래용)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제2항에서 "보증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보증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정서의 보증기한은 개별보증인 경우에는 주채무의 상환기일(변제기)을 의미하며, 근보증인 경우에는 주채무를 확정하는 결산기를 의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확정채무의 보증인 개별보증을 해당하므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 A의 구상금채무 역시 확정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B는 채무가 특정된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것이므로, 설령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 보증기간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기간 중에도 피고 B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보증책임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루미리치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52,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무, 국민은행에 대한 1,237,715,000원의 채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693,842,000원의 구상금채무 등이 있고,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소극재산 합계액에 못미치는 32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루미리치와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루미리치 앞으로 이 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루미리치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루미리치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진, 판사 윤재필, 판사 신재호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제1505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아파트

1층 내지 2층 각 452.898㎡

3층 내지 21층 각 435.978㎡

지1 70.5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 물 번 호 : 제18층 제1804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84.8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 29921㎡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9921 분의 60.35

끝.